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6. 29.
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6. 1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. 6. 18.
- 다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07. 6. 29)  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마포구 지역사회복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범위 조정(안 제4조제2항)  
중전의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었던 부구청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에서 제외함.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

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범위를 조정하고,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조례 제1조 중 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”은 조례에서 법령명을 인용할 경우 법령명 앞뒤에 낫표 (「」)를 사용하므로, 이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7. 6. 29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동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내용

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함.(제1조)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① (생략)           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           1. ~ 2. (생략)            3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           ③ ~ ④ (생략)</p>	<p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」 제29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          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기능) (개정안과 같음)</p>

